

|      |              |
|------|--------------|
| 문서번호 | 건설관리과-1268   |
| 결재일자 | 2016.1.26.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방침번호 | 구청장 방침 제116호 |

|     |        |        |          |      |              |
|-----|--------|--------|----------|------|--------------|
| 주무관 | 건설행정팀장 | 건설관리과장 | 안전건설교통국장 | 부구청장 | 구청장          |
| 고수곡 | 박천옥    | 구자호    | 김해성      | 김경호  | 01/26<br>김기동 |
| 협 조 |        |        |          |      |              |

◁ 체계적 · 효율적 도로(보도)점용 관리를 위한 ▷  
**차량진출입시설 관리 강화 계획(안)**



안 전 건 설 교 통 국  
 ( 건 설 관 리 과 )

◁ 체계적·효율적 도로(보도)점용 관리를 위한 ▷

# 차량진출입시설 관리 강화 계획(안)

보도 상 차량진출입시설에 대해 허가표지판 부착 등 시설관리를 강화하여 설치주체(점용인)에 대한 관리의식을 제고 및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효율적인 도로점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I. 추진근거

-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제6장(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규칙
-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시 보도환경개선과)
- 2016년 주요업무계획(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 II. 추진목적

-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의 조화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허가표지판 부착에 따른 설치주체의 보도 훼손 시 원상복구 등 시설 관리의식 제고
- 무허가(무단점유) 설치시설 적발 및 조치로 철저한 행정재산 관리
- 차량진출입시설 현황 현행화로 정확한 도로사용료 부과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점용 자료 관리
- 기존 허가시설에 대한 점용목적 연속성 및 적합성 조사로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갱신 시 참고자료 활용

### Ⅲ. 시설물 현황 (2016.1월)

#### ■ 도로점용(차량진출입시설) 현황 : 991개소

##### ○ 동별 현황

| 구분    | 합계       | 중곡동     | 능동     | 구의동     | 광장동     | 자양동    | 화양동 | 군자동    |
|-------|----------|---------|--------|---------|---------|--------|-----|--------|
| 개소    | 991      | 364     | 35     | 183     | 68      | 202    | 39  | 100    |
| 면적(㎡) | 21143.48 | 7262.95 | 1040.2 | 4176.68 | 1690.05 | 4239.4 | 855 | 1879.2 |

##### ○ 도로 노선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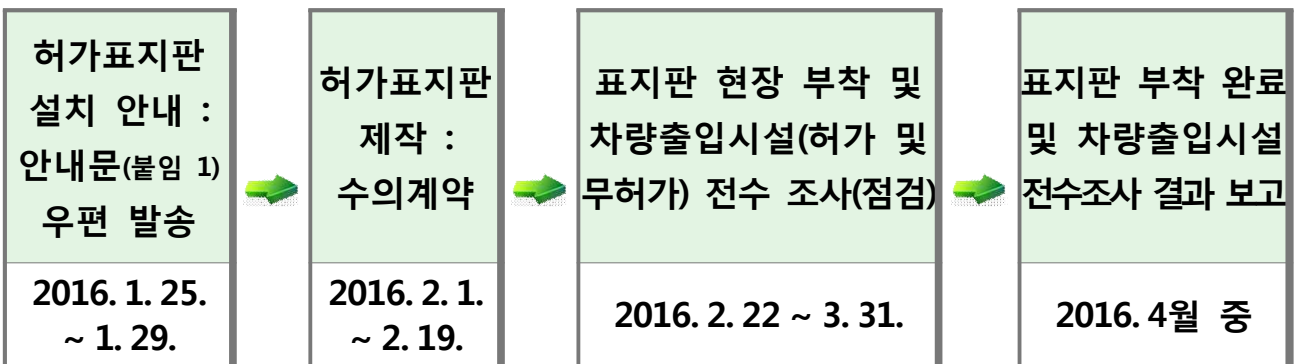
| 시도    | 도로명     | 합계     | 천호대로   | 동일로    | 능동로    | 자양로    | 아차산로   | 광나루로   | 용마산로 | 뚝섬로   | 면목로   | 기타 |
|-------|---------|--------|--------|--------|--------|--------|--------|--------|------|-------|-------|----|
|       | 개소      | 698    | 94     | 129    | 94     | 57     | 107    | 46     | 66   | 33    | 42    | 30 |
| 면적(㎡) | 16237.7 | 2794.8 | 3167.6 | 2126.6 | 1243.7 | 2765.7 | 1255.7 | 1398.4 | 524  | 445.7 | 515.5 |    |

| 구도    | 도로명     | 합계    | 영화사로   | 긴고랑로  | 자양번영로 | 군자로   | 구의강변로  | 구의로  | 광장로  | 자양강변길   | 기타 |
|-------|---------|-------|--------|-------|-------|-------|--------|------|------|---------|----|
|       | 개소      | 293   | 37     | 64    | 31    | 13    | 25     | 26   | 6    | 2       | 89 |
| 면적(㎡) | 4905.78 | 537.6 | 897.55 | 743.5 | 82.8  | 460.4 | 238.38 | 80.2 | 45.4 | 1819.95 |    |

### Ⅳ. 추진 계획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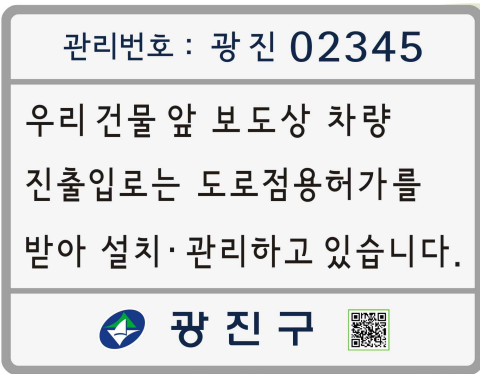





#### ■ 추진 일정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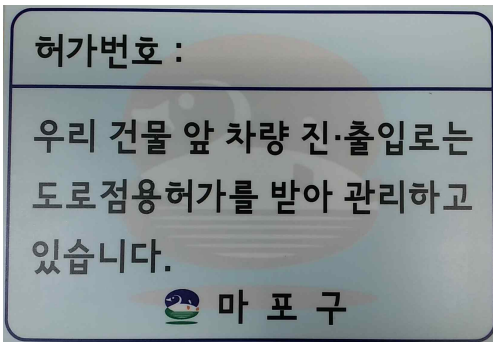

## 추진내용

### 1. 차량진출입시설 허가표지판 제작 및 부착

- 추진기간 : 2016. 2월 ~ 3월
- 추진대상 : 기 허가시설 991개소
  - ※ 총 표지판 제작개수 : 1,100개 ('16년 신규허가 예상 포함)
- 표시내용 : 관리주체, 구(區) 심벌, 관리번호, QR코드(도로점용 허가조건 - 「붙임 2」 참조)
- 설치방법 : 대상별 현장 방문 부착
- 설치위치 : 도로명주소 명판 하단 등 출입시설에 가까운 건물 외벽에 부착
- 재질 및 규격 : 알루미늄 / 26cm(가로) × 20cm(세로)
- 표지판 디자인 (안)

|  |  |
|--|--|
|  <p>관리번호 : 광진 02345</p> <p>우리 건물 앞 보도상 차량<br/>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를<br/>받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p> <p> 광진구 </p> |  <p>관리번호 : 광진 02345</p> <p>우리 건물 앞 보도상 차량<br/>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를<br/>받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p> <p> 광진구 </p> |
| 1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2안( <input type="checkbox"/> )   |

#### ※ 「참고」 타구 디자인

|  |  |
|--|--|
|  <p><b>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b></p> <p>• 허가번호 :<br/>• 점용면적 :           ㎡<br/>• 허가기간 :           ~</p> <p> 성동구</p> |  <p>허가번호 :</p> <p>우리 건물 앞 차량 진·출입로는<br/>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고<br/>있습니다.</p> <p> 마포구</p> |
| 성동구(재질 : 스티커)  | 마포구(재질 : 하드보드지)  |

- 소요예산 : 12,000천원(구비)

## 2. 기 도로점용(차량진출입) 허가시설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6. 2월 ~ 3월 ※ 허가표지판 부착과 병행 추진
- 조사대상 : 기 허가시설 991개소
- 조사내용
  - ㉠ 기존 점용허가내용 변경여부 확인 : 면적, 위치, 목적 등
  - ㉡ 보도 훼손 여부 확인 : 경계석 및 보도블럭 파손, 평탄성 훼손 등
  - ㉢ 설치금지 위치 허가여부 등 점용허가 연장의 적합성 확인 (2017년 기간연장 대상지만)
  - ㉣ 현장사진 등 허가관리 자료 확보

## 3. 무허가 차량진출입 시설 조사(적발)

- 조사기간 : 2016. 2월 ~ 3월 ※ 허가표지판 부착과 병행 추진
- 조사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무허가 차량진출입시설
- 적발대상
  - ㉠ 차량진출입로는 설치되어 있으나 허가표지판 미부착 지역
  - ㉡ 철판, 목재 등을 이용하여 임시 차량진입로 설치 지역

## V. 양 후 계 획

- 허가내용 변경사항 발견 시 원상복구 명령 또는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안내
- 무허가 시설물 적발 시 건물주 및 실 사용자 면담을 통해 적법한 허가절차 안내로 양성화 유도 등 행정조치 실시
- 관리대장 작성을 통한 정확한 DB자료 구축



- 붙임 1. 차량출입시설 허가표지판 설치 안내문(우편발송) 1부.  
2. QR코드 접속 시 안내 내용(도로점용 허가조건) 1부.

【붙임 1】

## 도로점용(차량진출입시설) 허가표지판 설치 안내문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에서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에 따라 귀하(사)께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을 허가 받아 2016년 현재 계속 사용 중인 곳에 아래와 같이 허가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할 예정입니다.

### 차량진출입시설 허가표지판 설치(부착) 안내

|            |   |
|------------|---|
| 설 치 대 상    |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허가 건물(주택, 상가 등)   |
| 설 치 기 간    | 2016. 2월부터 ~ 2016. 3월까지 ※ 설치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 표지판내용      | 관리주체, 관리번호, QR코드(접속 시 허가조건 안내)  |
| 설 치 위 치    | 도로명주소 명판 하단 등 출입시설에 가까운 건물 외벽에 부착   |
| 설 치 방 법    | 설치기간 중 담당공무원 현장 방문 부착   |
| 부 착 디자인(안) |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p>관리번호 : 광 진 02345</p><p>우리 건물 앞 보도상 차량<br/>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를<br/>받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p><p> 광 진 구 </p></div> |

3. 이에, 담당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허가표지판 부착 시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02-450-782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광 진 구 청 장

## 【붙임 2 : QR코드 접속 시 안내 내용】

### 도로점용(차량진출입시설) 허가조건

1.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2. 허가기간 연장(계속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 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 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양수일 또는 분할.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7.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8.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 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0.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2.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